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23
----------	-------

발의연월일 : 2026. 9. 29.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이현승
김은혜 · 최보윤 · 윤한홍
유용원 · 김재섭 · 주호영
김 건 · 이달희 · 이만희
안철수 · 김장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 · 저작권 · 특허권 ·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의 직권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현행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기술유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국경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등록 · 공시를 전제로 하는 특허권 · 상표권 등과 달리 권리관계 및 침해 여부를 세관장이나 권리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지식재산권과 동일한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류·유치 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되 관련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수사 종결 시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수출입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5조 등).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10항까지”로, “통관”을 “통관 보류나 유치의 요청, 통관”으로, “유치해제”를 “유치해제, 수사 개시 및 종결 사실의 통보와 재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1항 각 호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으로 한다.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이하 “산업기술”이라 한다)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⑤ 국가정보원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제8호에 따른 산업기술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하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산업기술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

나.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임을 알고 취득한 영업비밀

⑦ 제5항에 따른 요청으로 제6항 본문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는 기간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요청한 기관의 장이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관의 보류 또는 유치를 계속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통관의 보류 또는 유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세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5항에 따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수사가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⑩ 제7항 단서에 따라 통관의 보류 또는 유치가 계속되는 경우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는 통관의 보류 또는 유치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통관의 허용 및 유치의 해제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

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①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이하 “산업기술”이라 한다)
<u><신 설></u>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 ----- ----- ----- ----- -----.

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

⑤ 국가정보원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제8호에 따른 산업기술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하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산업기술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

나.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임을 알고 취득한 영업비밀

⑦ 제5항에 따른 요청으로 제6항 본문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는 기간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신 설>

요청한 기관의 장이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관의 보류 또는 유치를 계속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통관의 보류 또는 유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세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5항에 따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수사가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

⑩ 제7항 단서에 따라 통관의 보류 또는 유치가 계속되는 경우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는 통관의 보류 또는 유치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통관의 허용 및 유치의 해제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까지-----
-----통관 보류나 유치의 요청, 통관-----
-----유치해제, 수사 개시 및 종결 사실의 통보와 재심사-----.

⑫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 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2. (생략)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 ----- ----- -----제3 항·제4항·제6항 및 제11항-- ----- ----- ----- -----. 1. 2. (현행과 같음)